

##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(청문출석요구서) 공시송달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(청문출석요구서)를 통지하고자 하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,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



1. 건 명: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(청문출석요구서)
2. 근 거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 참조(공시송달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07. 01.~ 2026. 07. 15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조현주 주무관(Tel. 02-2077-33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불임 】

## 공시송달 명단

사업장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소재지)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	송달 불능 사유
			위반사항	처분내용	청문일시	청문주재자	
(주)안테나 (제2015-028호)	나O흠 (마포구 성미산로5길)	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(청문출석요구서)	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사회적기업 인증취소	- 일시: 2026. 7.16.(목) 10시 - 장소: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8층 지역협력과 회의실	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팀장 이동희	폐문 부재

### < 청문 시 유의사항 >

-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,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아울러, 「행정절차법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, 위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,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,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의 포기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경우, 청문포기 확인서를 청문 실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1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

